

안전보건관리 지침

제정·개정 이력	
2026.01.01	최초 제정
담당부서	관리부

I. 안전보건경영 방침

1. ㈜클린포트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클린포트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클린포트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클린포트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5. ㈜클린포트는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6. ㈜클린포트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II. 안전보건관리 규범

제1장 총 칙

가.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클린포트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라. (안전보건경영방침) ①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ㄷ)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대표이사, 현장소장,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9.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10.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11.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2.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1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자) ①회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⑤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보건관리자) ①회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⑤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마. (산업보건의) ①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임직원

3. 회사의 대표자

4.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①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교육

가.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신규채용자 교육) ①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 ①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호조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마. (물질안전보건교육)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바.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사. (안전보건교육강사) ①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아.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①회사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보건경영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경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다.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지 등) ①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담당부서 또는 산업재해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위험성 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피난 및 대응훈련)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사.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 (근골격계질환예방) ①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안전보건 보호구) ①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